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8
----------	-------

제출년월일 : 2024. 8.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폭넓게 위촉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안 제8조)

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안 제11조)

라.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직 개편사항(2024. 2. 1. 자) 반영 등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1조(지역위원회), 16(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2)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7. 11. ~ 7. 31.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연재난(폭염 및 한파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를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제41조제2항 중 “상황실은 재난대책 사무실에 설치하고”를 “상황실 및”으로, “본관 1층 종합상황실에”를 “내에”로,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그 소관”을 “매년 그 소관 재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을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제4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① (생략)

② 자연재난 관련 상황실은 재난 대책 사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재난 관련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본관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4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황실 및 -----

내에 -----

----- 구청장-----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

② -----

-----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별표1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 분야	재난유형	재난수습 주무부서	
		국(통제관)	과(담당관)
자연 재난	(생략)		
	1~8.(생략)		
사회 재난	9. 정보·통신분야 관련피해	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10.(생략)		
	11.(생략)		
	12.(생략)		
	13.(생략)		
	14. 화생방 관련 피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15.(생략)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2

실무반 편성과 임무

1. 자연재난의 경우

실무반	임무와 역할	실무부서 (지원부서)
상황관리총괄반	1) 재난상황 관리팀 (생략)	
	2) 상황 보고팀 (생략)	
	3) 상황관리 총괄팀 (생략)	
	4) 행정 지원팀 (생략)	
협업가능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주민생활 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조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 대책 추진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자)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지원	
	2) 긴급통신 지원반 (생략)	
3) 시설응급 복구반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 분야	재난유형	재난수습 주무부서	
		국(통제관)	과(담당관)
자연 재난	(현행과 같음)		
	1~8.(생략)		
사회 재난	9. 정보·통신분야 관련피해	재정관리국	스마트정책과
	10.(생략)		
	11.(생략)		
	12.(생략)		
	13.(생략)		
	14. 화생방 관련 피해	행정지원국	재난총괄부서
	15.(생략)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2

실무반 편성과 임무

1. 자연재난의 경우

실무반	임무와 역할	실무부서 (지원부서)
상황관리총괄반	1) 재난상황 관리팀 (현행과 같음)	
	2) 상황 보고팀 (현행과 같음)	
	3) 상황관리 총괄팀 (현행과 같음)	
	4) 행정 지원팀 (현행과 같음)	
협업가능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장례 및 유가족 편의 지원), 응급생계구조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자)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지원	
	2) 긴급통신 지원반 (현행과 같음)	

4) 에너지 기능 복구반	(생략)	공익복지과 맑은환경과 (주택상생과, 도시계획과) 재난총괄 부서 (재무과, 보행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보간행정과)
5)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생략)	
6) 교통 대책반	(생략)	
7) 의료· 방역반	(생략)	(위생과, 재산세과) 깨끗한 마포과 (건축지원과) 감사담당관 (일자리창년과, 경제진흥과, 장수과) 마포경찰서 지치행정과
8)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생략)	(체육진흥과, 교육정책과) 의안과 (건강동행과, 세무2과) 마포소방서 홍보 미디어과 (세미포담당관, 가족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9) 사회질서 유지반	(생략)	
10) 자원봉사 지원반	(생략)	
11) 수색· 구조· 구급반	(생략)	
12) 재난수습 홍보반	(생략)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생략)	

2. 사회재난의 경우 (생략)

별 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1. 자연재난(호우·대설·태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편성 기준	비상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본 부 장			
차 장			
총괄조정관			
통 계 관			
담 당 관			
실무반원수			
반 장	(생략)		
실 무 반	1)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상황 관리팀	
		상황보고팀	
		상황관리 총괄팀	
		행정지원팀	

3) 시설유급 복구반	(현행과 같음)	도로개선과 (건축지원과)
4) 에너지 기능 복구반	(현행과 같음)	맑은환경과 (문화예술과)
5)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현행과 같음)	재난총괄 부서 (행정지원과)
6) 교통 대책반	(현행과 같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7) 의료· 방역반	(현행과 같음)	보간행정과 (위생과)
8)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현행과 같음)	깨끗한 마포과 (자원순환과)
9) 사회질서 유지반	(현행과 같음)	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마포경찰서
10) 자원봉사 지원반	(현행과 같음)	지치행정과 (체육진흥과)
11) 수색· 구조· 구급반	(현행과 같음)	의안과 (건강동행과) 마포소방서
12) 재난수습 홍보반	(현행과 같음)	홍보 미디어과 (세미포담당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행과 같음)	

2. 사회재난의 경우 (현행과 같음)

별 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1. 자연재난(호우·대설·태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편성 기준	비상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본 부 장			
차 장			
총괄조정관			
통 계 관			
담 당 관			
실무반원수			
반 장	(현행과 같음)		
실 무 반	1)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상황 관리팀	
		상황보고팀	
		상황관리 총괄팀	
		상황관리총 괄팀	

2) 협업 가능 반 (a)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복지지원부서: 생활보장과, 어르신행복과, 장애인행복과
	나. 긴급통신 지원반	디지털재정과(지원부서: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다. 시설응급 복구반	도로개선과(지원부서: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라. 에너지기능 복구반	맑은환경과(지원부서: 주택상생과, 도시계획과)
	마.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재무과, 보행행정과)
	바.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지원부서: 주차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사. 의료·방역반	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 재산세과)
	아.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깨끗한미포과(지원부서: 건축지원과)
	자. 사회질서 유지반	감시담당관(지원부서: 일자리청년과, 경제진흥과, 징수과)
	차. 자원봉사 지원반	자치행정과(지원부서: 체육진흥과, 교육정책과)
카. 수색·구조· 구급반	의약과(지원부서: 건강동행과, 세무2과)	
타.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미디어과(지원부서: 새마포담당관기동행복지원과, 이동청소년과)	
3) 재난관리 협업기관(β)		(생략)

비고(근무방법) (생략)

2) 협업 가능 반 (a)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행정지원팀 복지정책지원부서 장애인보호과, 어르신행복과, 기동행복지원과
	나. 긴급통신 지원반	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
	다. 시설응급 복구반	도로개선과(지원부서: 건축지원과)
	라. 에너지기능 복구반	맑은환경과(지원부서: 문화예술과)
	마.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행정지원과)
	바.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지원부서: 주차관리과)
	사. 의료·방역반	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
	아.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깨끗한미포과(지원부서: 자원순환과)
	자. 사회질서 유지반	감시담당관(지원부서: 관광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반	자치행정과(지원부서: 체육진흥과)
카. 수색·구조· 구급반	의약과(지원부서: 건강동행과)	
타.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미디어과(지원부서: 새마포담당관)	
3) 재난관리 협업기관(β)		(현행과 같음)

비고(근무방법)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일부개정안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항의 구성 인원 확대 (20명 이내 → **25명 이내**)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 필요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하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생략)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이하 생략)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안에 따라 위촉직 위원 인원 확대로 직접적인 비용 발생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24년 기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편성액은 140천원 (70,000원*1명*2회)임
- 운영수당 및 기타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이수정
연락처	02-3153-9464